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민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해운대구, 금정구, 부산진구

내 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시설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1의2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는 ① 최초 실시시기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② 그 이후의 실시시기는 안전등급이 B등급인 경우 5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7,000만원)

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과)에서는 2005. 10. 24. 사용 승인된 천연사랑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하여 2016. 10. 24.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예비감사 착수(2017. 2. 6.)전까지 약4개월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경과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미실시하였는데도 이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 2. 21.부터 같은 해 3. 8.까지 (주)○○엔지니어링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미시행에 따른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부산진구(○○과)에서는 2010. 12. 19.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지오플레이스 건축물에 대하여 2015. 12. 19.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15개월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경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밀안전진단 미시행에 따른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금정구(○○과)에서는 2011. 12. 3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병원 건축물에 대하여 2016. 12. 30.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병원 사정에 의해 2017. 1. 27.부터 같은 해 2. 23.까지 휴업하는 관계로 병원 측 으로부터 2월 업체선정하고, 3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경위서만 받고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진단 업체 미지정 등 정밀안전진단이 미시행 되고 있는데도 시행 독려 등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밀안전진단 미시행에 따른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민간관리주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⁴⁹⁾ 미 실시 현황

구 분	시설물	종별	안전 등급	사용승인일	정밀안전진단		비고
					직전진단일	진단기한	
소 계	3개소						
해운대구	○○○○○/T	1종	B	2005.10.24	-	2016.10.24	
부산진구	○○○○○○○	1종	B	2000.5.25	2010.12.19	2015.12.19	
금 정 구	○○병원	1종	B	1999.12.30	2011.12.30	2016.12.30	

조치할 사항 해운대구, 금정구, 부산진구청장은

[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미 실시한 민간관리주체 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촉구하고, 지연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조치 하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9) 안전진단 'B'등급 : 5년에 1회 이상(시행령 별표 1의2), 리모델링 등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사전 협의하여 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